
「모두의 용기」와 함께하는 생활 속 다회용기 재사용 확산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

「소규모 행사 및 축제 다회용기 활성화」 지원사업 공고

대구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(사)커뮤니티와경제는 대구 대표 다회용기 서비스 「모두의 용기」와 함께 생활 속 다회용기 재사용 확산을 통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, 사회연대경제기업 및 유관기관이 운영하는 소규모 행사에 다회용기 도입을 지원하는 「소규모 행사 및 축제 다회용기 활성화」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사회연대경제기업 및 유관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6년 10월 6일

사단법인 커뮤니티와경제 이사장
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

1 사업 개요

□ 사업명 : 「소규모 행사 및 축제 다회용기 활성화」 지원사업

□ 추진목적

- 사회연대경제기업 및 유관기관이 주관·참여하는 마을 축제, 소규모 공동체 시민 행사 등에 다회용기 도입을 지원하여 생활 속 다회용기를 경험하고, 재사용하는 문화 확산에 기여

□ 지원내용

- 다회용기(컵, 접시, 그릇 등) 대여비(100만원 내외) 지원. (단, 세척비는 **자부담**)

※ 대여비 지원규모는 신청서의 내용을 개별 심사하여 확정하며, 대여비를 일부 자부담하는 경우 우선 지원

※※ 세척비는 최소비용(다회용기 1개당 110원)으로 별도 책정되며, 대여량에 따라 달라짐.

※※※ 대여한 다회용기의 분실·훼손 시 일정한 비용을 청구함

□ 지원기간 : 지원협약일 ~ 2026년 11월(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)

□ 지원대상

- 대구 사회연대경제기업 및 유관 조직※이 주관·운영하는 일반 시민 대상 비영리 행사 ※((예비)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(사회적)협동조합, 자활조직 및 기업 등)

□ 지원조건

- 대구 사회연대경제기업 및 유관 조직이 주관·운영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
- 비영리 행사로 자체조달 예산으로 운영하거나, 다회용기 대여비를 일부 자부담하는 경우 우선 지원함
- 예산지원(중앙부처, 지자체, 공공기관 등)을 받는 경우, 지원 규모나 행사 성격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

□ 주 관 :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, (사)커뮤니티와경제

□ 후 원 : 한국가스공사

2 신청 및 접수 안내

□ 신청 안내

- 신청 기간 : 공고일 ~ 2026.10.23.(금) 18:00까지 **선착순 접수·평가 후 지원**
※ 신청 기간 중 우선 접수 순서부터 심사 후 필요 시 즉시 지원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.

- 신청 방법 : 이메일 접수 dg_cnb@daum.net
※ 제출서류 통합파일로 압축하여 이메일 접수

○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
1	사업신청서 및 계획서
2	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3	사업자등록증
4	사회연대경제기업 및 유관기관 관련 인증서 ※ (예비)사회적기업 인증서(지정서), 협동조합 설립인가증, 마을기업 지정서 등

- 접수 및 문의 ※ 문의사항은 이메일 접수 시 별도 답변

접수 이메일	문의처	연락처
dg_cnb@daum.net	모두의 용기	053-710-8242

3 추진 절차 및 일정

□ 추진 절차

추진 절차	세부 내용	비 고
사업 신청 ↓	- 신청기간 : ~ 2026.10.23.(금) 18:00 - 접수방법 : 담당 지원기관 이메일 접수	선착순 접수심사
심사 ↓	상시 심사 후 통보	서면
결과발표 ↓	심사결과발표 : 개별 안내	-
협약 체결 및 다화용기 지원 ↓	- 협약 체결 : 행사 진행 전 - 다화용기 대여 진행	
결과 보고	다화용기 도입 결과보고	행사 종료 후

4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적격과제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※ 접수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연장공고 또는 추가모집 진행 가능
-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중복 지원인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
-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지원 제외가 될 수 있음
-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
- 서류 미비의 경우 내용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불응 시 지원 포기로 간주함
- 사업 협약사항을 적절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, 이후 (사)커뮤니티와경제에서 공모하는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